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http://www.assi.or.kr/>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문서번호 시험 2019 - 17호

시행일자 2019. 02. 19.

수 신 협회 회원사 대표

참 조

선			지	
결			시	
점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람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의 부당감액정산 불가 관련 조달청 회신 알립

1. 국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발주기관이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을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타당여부를 국가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에 질의하여 그 회신 결과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의 감액정산 타당여부(질의) 1부.

(2) 조달청 답변 내용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붙임 (1)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의 감액정산 타당여부(질의)

1.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바른조달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 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당특약금지의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부당히 제한 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 특수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 46885)
3. 총액입찰에 의한 용역은 계약 목적물을 확정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가기준에 따른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로 환산하는 방식이고 계상된 인원은 계약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므로 내역서 상 인원을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총액입찰방식은 낙찰된 금액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성하여 성과품에 문제가 없다면 투입인원과 투입비용의 과다, 과소에 관계없이 계약대로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발주자가 임의대로 투입인원을 확인하여 과소하게 투입되었을 경우 감액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 청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끝.

붙임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액적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용역의 감액정산 타당여부

[답변내용]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私)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